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1.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2.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가. 제출일자 : 1991년 12월 23일

나. 회부일자 : 1991년 12월 23일

3. 제안이유

- 소방법 개정공포(법률 제4419호, '91. 12. 14)에 따라 소방업무의 수행책임이 국가(시장, 군수)에서 도지사로 전환

4. 주요골자

- 소방업무에 대한 도지사의 권한을 관할 소방서장 및 소방서 미설치지역의 관할 군수에게 위임

5. 검토의견

-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을 검토한바
- 현재의 국가소방체제에 있어서는 시·군 소방서의 소방업무는 소방서에 서, 지휘, 감독은 당해 기초자치단체장인 시장, 군수가 하도록 되어 있어 이원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 기초자치단체단체(시·군) 중심의 소방사무는 재해가 광역화, 대규모화됨에 따라 1개 시·군의 소방력으로는 대처하기가 곤란하므로 2개 이상의 시·군단위 자치단체를 권역화하여 소방관서를 설치함으로써 인력장비 재정관리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대형화재시 인근 타소방관서와 상호지원체제가 용이하도록 지휘 감독체계를 시장·군수에서 도지사로 일원화하는 것임

- 그러므로 법률 제4, 419호('91. 12. 14)로 개정 공포한 소방법 제3조, 부칙 제1조 제2조에 근거하여 도지사의 권한위임사무 52건은 소방관서가 설치된 시지역은 소방서장에게, 소방서 미설치지역은 관할지역의 군수에게 권한 위임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한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신원섭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대리 김기한 네

○ 신원섭위원 산불예방도 좋은데 여지껏 행정을 보면 민선군수 시장이 이거 뭐 다시 책임을 물으라고 위임을 하는것인지 모르겠는데 산불나면 잘못하면 면책을 당하는게 소방서 관계인데 앞으로 행정은 그런게 되어서는 안될거 같아요, 산불나는걸 군수가 그 넓은데를 다지킬수도 없는것이고 한데, 산불좀 났다고 면책을 당하고 그런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 민방위국장 전석조 글썽 뭐 사실 산불관계도 지금까지 사례로 보면 하나의 소방관할에 속하는 사항이죠, 그런데 지금까지 산불관계는

산림관련조직에서 주체가 되어가지고 시군단위 소방관련부서의 의용소방대는 하나의 거기에 참여하는 식으로써 지금까지 소방분야를 다루어왔습니다. 앞으로도 다루어 줘야할 사항이고,

○ 신원섭위원 산불예방감시원도 있고한데 혹시 시골에서 보면 산불이 났다면 군수가 이리뛰고 저리뛰고 기자들이 이리다니고 저리다니고 하는데 행정적으로 이제는 그것도 공평을 기해야 될것 같아요 질의사항 없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한 더이상 질의하실위원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의사일정 제20항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